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7월 22일, 정부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 8.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4. 8. 28.) 상정, 제안설명, 축조
심사, 의결(원안가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 9. 4.)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부 제출)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청년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선영)

청년의 경우 자금 및 경험부족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수산업 진입에 필요한 비용, 능력, 경력 등을 갖추기 어려우므로, 수산업 분야에 청년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가 등의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정책사업과 그 밖에 법률의 내용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청년어업·수산인의 유입·정착을 위해 청년 유입 단계, 정착단계 등 단계별 맞춤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2020년 제정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에서 “후계청년농어업인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청년어업인 대상 영어(營漁)체험 기회 제공, 어업 관련 교육 실시, 청년어업인 고용 우대 등 청년어업인 육성에 관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수산업 및 어촌에 관한 기본법인 현행법에는 정부의 ‘후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청년수산인’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미래 수산업인력 확보를 위한 시책 마련에 있어 청년수산인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미래 수산업인력의 지속적인 확보라는 법률조항의 취지를 실현하고 청년 수산인에 대한 시책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경태)

미래 수산업인력 확보 마련을 위한 시책 마련 시 청년수산인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필요성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8. 기타 사항

없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후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을 “(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후계수산업경영인”을 “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으로, “수립하고”를 “수립하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u>후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u>)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래의 수산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u>후계수산업경영인</u> 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u>수립하고</u>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u>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u>) ----- ----- ---- <u>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u> ----- <u>수립하여</u> -----.